

이행권고결정

사 건 [redacted] 물품대금

원 고 [redacted]

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.

피 고 [redacted]

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.

[redacted]

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.

이 행 조 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원고 소송대리인

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:

조효동

피 고

물품대금 청구의 소

청구취지

1. 피고는 원고에게 2,818,9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